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101308 전직금지등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강석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현
변 론 종 결 2022. 3. 22.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8. 11. 26.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 상호 변경 전후 모두를 '원고'라 한다)는 개인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입사하여 사업관리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30.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입사할 당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경업금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4.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아울러, 현재 회사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쟁사들이 나타나는 등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등 제반 정보가 제3자로 유출, 이전, 제공되는 경우 회사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민감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이에 본인은 D, E, F, G, H, I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회사명 오기, 사명 변경 등과 관련 없이 동일 회사)과 현재 알려지지 않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의 회사 및 향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감사, 고문, 주주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직하거나 근무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서약의 모든 사항 일체를 위반치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해고, 감봉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근무자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공제전 급여총액, 퇴직자의 경우 퇴직전 1년간 실 지급된 공제전 급여총액의 3배를 회사에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본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다. 피고는 2018. 11. 19.경 소프트웨어 개발 등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라 한다)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18. 12. 17.경부터 K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채널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동종 업체로 전직하여 근무하지 않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서 지득한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도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경쟁업체인 K로 전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전직금지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전 1년간 실지급된 공제 전 급여 총액의 3배를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8년 급여 36,800,000원의 3배인 110,400,000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우선 청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6. 3.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8. 10.경 퇴사할 당시까지 원고 회사에서 POC와 BMT 업무를 수행하였다.

POC(Proof Of Concept)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고 회사의 제품 기능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원고가 제공하여 설치한 제품을 고객이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 간 사용하도록 하면서 고객의 시스템에 원고의 제품이 잘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BMT(Benchmark Test)는 고객이 여러 회사의 제품을 자



신의 평가기준에 따라 테스트한 다음 평가하여 발주할 제품을 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POC와 BMT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사를 방문하여 제품을 시연하고, 설치하며 제품의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작성한 업무 인수인계서(갑 제8호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는 주로 POC 및 BMT 관련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수행기간, 인원 배정 및 장비섭외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제품 구축 시 발생하는 기술적 및 영업적 이슈에 대하여 보고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하게 교육시킨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동종업계의 영업비밀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지득한 정보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원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②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의 연봉은 2016. 3. 입사 당시 22,000,000원이었고, 2016. 9. 24,000,000원으로, 2016. 11. 32,000,000원으로, 2018년에 36,80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고 피고가 2017. 5. 이후 직책수당 2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상 전직 금지 대상에는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사 영업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고, 향후 동종·유사 영업을 계획 중인 회사까지 포함된다.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3년간 지역적 제한도 없이 위 금지 대상 업체에 정규직, 비정규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④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의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형태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⑤ 피고는 충분한 인수인계를 마치는 등 퇴사 과정에서 원고 측과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K의 채용공고를 보고 일반 공채를 거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K 입사를 전제로 K 측과 교섭했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24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풍

 판사 정종건

 판사 이학인